



원무팀

Administration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발급안내

-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가족력, 주증상, 진단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진료 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동의서 등(만 14세 미만인 경우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증명서, 친족의 동의서, 위임장 구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동의서 지참해야 합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uemc.ac.kr)에서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진료
안내



진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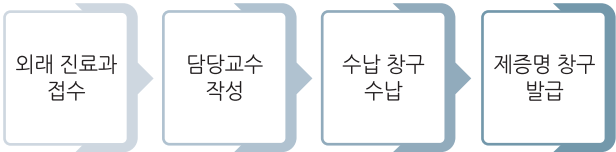
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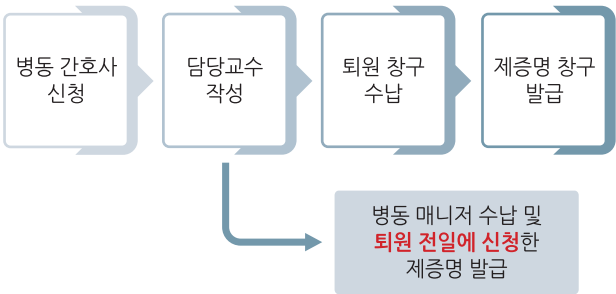
발급절차

증명서

· 외래 환자



· 입원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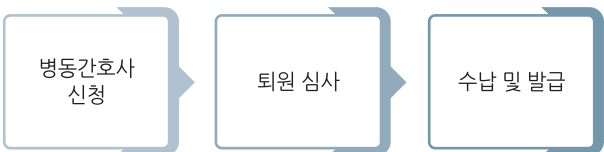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

· 외래 환자



· 입원 환자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친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함 (단, 형제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추가서류의 제출이 필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발급비용	비고
일반진단서(국문)	20,000원	
일반진단서(영문)	20,000원	
소견서	20,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건강진단서(면허추가)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사체검안서	30,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장애진단서	15,000원	
경신지체장애진단서	40,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원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	1,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입원(재원)확인서	3,000원	
출생증명서	3,000원	
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원	검사로 포함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원	검사로 포함
진료기록사본	5매까지 장당 1,000원	추가 장당 100원
진료영상(CD)	10,000원	
진료영상(DVD)	20,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유의사항

발급 장소

- 각종 증명서
 - 1층 원무팀 제증명 발급 창구
- 의무기록 & 영상사본
 - 1층 원무팀 의무기록 / CD 사본 발급 창구

발급 시간

- 각종 증명서
 - 평일 : 08:00 ~ 17:00
- 의무기록 & 영상사본
 - 평일 : 08:00 ~ 17:00

TIP!

발급 시 유의사항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장 및 지장은 자필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제13조의 2)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 찾아오시는 길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2



1899-0001

진료예약 이용시간 - 평일 08:00~17:00

www.emc.ac.kr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엔 '을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

대전율지대학교병원

노원율지대학교병원

강남율지대학교병원